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윤 영 창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으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4. 검토의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